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8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.

발 의 자: 안규백·고용진·김민기

김승원 • 양정숙 • 위성곤

이성만 · 이정문 · 이형석

전혜숙 · 주철현 의원

(10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.

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, 국회군인권보호 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·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회군인 권보호관법안」을 제정하고자 함.

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·의사(議事)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국회법」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 「국회법」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의4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901호), 「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」(의안번호 제49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4(국회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 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군 인권보호관을 둔다.

- ② 국회군인권보호관 1명과 그 소속으로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-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.
-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국회군인권보호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 <신 설> 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국회운영위원회가. ~ 바. (생략) <신 설> 	제22조의4(국회군인권보호관)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둔다. ② 국회군인권보호관 1명과 그소속으로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의장이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임면한다.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국회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
<u>사.·아.</u> (생 략)	<u>속하는 사항</u> <u>속하는 사항</u> <u>아.·자.</u> (현행 사목 및 아목 과 같음)

2. ~ 16. (생 략)	2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